● 금융위원회공고 제2018-247호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담보부사채신탁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1) 과태료 부과기준 (안 제2조, 별표)
- □ 담보부사채신탁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일반기준(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면, 면제 또는 가중(2분의 1 이내에서 할 수 있음)과 개별기준(개별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법률상 부과한도액의 100%, 60%, 30%, 20% 등으로 차등 규정하고 있는 타 업권 사례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의 기준금액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u>2018. 10. 8.(월)까지</u>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02-2100-2653팩스: 02-2100-2648
 - ㅇ 이메일 : dscho@korea.kr